

# 기업투자(D-8)

<b>활동범위 및 해당자</b>	<p>1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*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**[이하 '법인에 투자(D-8-1)'로 구분]          *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, **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</p> <p>2.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[이하 '벤처 투자(D-8-2)'로 구분]</p> <p>3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(개인)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* [이하 '개인기업에 투자(D-8-3)'로 구분]          *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</p> <p>4. <u>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</u> [이하 '기술창업(D-8-4)'으로 구분]</p>
<b>체류기간의 상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: 5년</li> <li>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: 2년 (단,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)</li> <li>■ <u>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</u> : 2년 (단,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)</li> </ul>
<b>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b>	<p><b>1.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「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」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(D-8-1) 사증발급 (특정국가 제외)</b></p> <p>가. 기본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(설립완료 법인만 해당) 일 것</li> <li>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)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, 선임 계약 등을 체결 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)</li> </ul>

<p><b>▶ 목차</b></p> <p><b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b></p>	<p>※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(단,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)</p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</li> </ul> <p>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</p> 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<a href="#">수수료</a></li> <li>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(파견기간 명시) 및 재직증명서</li> <li>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</li> <li>④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주주변동상황증명서 원본</li> <li>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ⓐ 현금출자의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(금융기관)의 외화반출허가(신고)서 (해당자)</li> <li>-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(송금확인증, 외국환 매입증명서, 세관신고서 등)</li> </ul> </li> <li>ⓑ 현물출자의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(관세청장 발행)</li> <li>-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(물품구매 영수증,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,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)</li> <li>-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(사무실 임대차 계약서, 사업장 전경·사무공간·간판 사진 등 자료)</li> <li>-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(필요시 징구)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
<p><b>2.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(D-8-2) 사증발급 (중국, 특정국가 제외)</b></p> <p><b>가. 기본요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(또는 설립예비)*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(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)**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</li> </ul>	

<p><b>▶ 목차</b></p> <p><b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b></p>	<p><b>평가***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(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)도 해당</li> <li>**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<b>기술신용보증기금</b>(기술신용보증기금법), <b>중소기업진흥공단</b>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) 또는 <b>한국벤처캐피탈협회</b>(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)에서 실시</li> <li>*** 평가는 <b>기술신용보증기금</b>(기술신용보증기금법) 또는 <b>중소기업진흥공단</b>(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)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</li> </ul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</li> <li>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</li> </ul> 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, <b>수수료</b></li> <li>②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</li> <li>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</li> <li>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증(특허청), 실용신안등록증(특허청), 디자인등록증(특허청), 상표등록증(특허청), 저작권등록증(한국저작권위원회) 등 사본</li> <li>-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</li> </ul> </li> <li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li> </ul>
<p><b>3.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(D-8-3) 자격 사증발급</b></p> <p><b>가. 기본요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(개인)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</li> <li>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)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(단,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)</li> </ul> </li> <li>■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</li> </ul>	

<p><b>▶ 목차</b></p> <p><b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b></p>	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</li> </ul> <p>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</p> 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<a href="#">수수료</a></li> <li>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</li> <li>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(사용 내역) 입증서류</li> <li>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</li> <li>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ⓐ 현금출자의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(금융기관)의 외화반출허가(신고)서 (해당자)</li> <li>-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(송금확인증, 외국환 매입증명서, 세관신고서 등)</li> </ul> </li> <li>ⓑ 현물출자의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(관세청장 발행)</li> <li>-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(물품구매 영수증,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,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)</li> <li>-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(사무실 임대차 계약서, 사업장 전경·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)</li> <li>-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(필요시 정구)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</p> 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
<p><b>4.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(D-8-4) 사증발급</b></p> <p><b>가. 기본요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*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</li> </ul>	

## ▶ 목차

###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

- \*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
- 지식재산권\*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\*\*을 가지고 있을 것
- \* 특허권(특허법), 실용신안권(실용신안법), 디자인권(디자인보호법), 상표권(상표법), 저작권(저작권법)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
- \*\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 아이템을 말하며,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
-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

#### 나. 신청기관

-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
- 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

#### 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[수수료](#)
-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
- ④ 접수제 해당 항목( 및 접수) 입증 서류
  - 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자는 특허증·실용신안등록증·디자인등록증 사본
  - ☞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'특허정보넷 키프리스'(www.kipris.or.kr/khome/main.jsp) 활용
  -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
  -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'글로벌창업이민센터'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(OASIS) 해당 항목 이수(수료, 졸업) 증서, 입상확인서,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
  - 기타 접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
- 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### 4-1.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,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(D-8-4S) 사증발급

#### 가. 기본요건

-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

■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

※ 단,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가능하며, 입국 후 체류기간(6개월)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필요

#### 나. 신청기관

■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

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

#### 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-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제출 가능 시)
- ③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#### ▶ 목차

공관장 제량으로

발급할 수 있는

사증

## 5.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·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

■ 기업투자(D-8)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(C-3-4)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

## 6. 한·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

#### 가. 대상자

■ 기업대표 (협정 제2조 다호)

-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·개인기업의 설립 문서(정관)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

#### 나. 사증발급 공관 : 자국 소재 한국공관

#### 첨부서류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
  - ② 과견명령서(과견기간 명시) 또는 재직증명서
  -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
  -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

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

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	<h2>7. 한·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</h2> <p><b>가. 대상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(협정 제3조 가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(협정 제2조 다호)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나. 사증발급 공관 : <u>자국 소재 한국공관</u></b></p>
	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</li> <li>② 파견명령서(파견기간 명시)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li>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</li> <li>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 <p>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 <p>*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<b>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</b>	<h2>1.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(D-8-1) 자격</h2> <p><b>가. 기본요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</li> <li>■ 투자금액*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)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, 선임 계약 등을 체결 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)</li> </ul> <p>*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(단,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)</p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</li> </ul> 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</li> <li>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(파견기간 명시) 및 재직증명서</li> <li>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</li> <li>④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</li> <li>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</li> </ul>

<b>사증발급인정서</b> <b>발급대상</b>	<p>⑤ 현금출자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(금융기관)의 외화반출허가(신고)서 (해당자)</li> <li>-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(송금확인증, 외국환 매입증명서, 세관신고서 등)</li> </ul> <p>⑥ 현물출자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(관세청장 발행)</li> <li>-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</li> </ul> <p>⑦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(물품구매 영수증,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,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)</li> <li>-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(사무실 임대차 계약서, 사업장 전경·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)</li> <li>-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(필요시 청구)</li> </ul> <p>▶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증명서 제출  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<h2>2.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</h2>	<p>가. 기본요건</p> <p>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(또는 설립예비)*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(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)**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***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</p> <p>*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(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)도 해당</p> <p>**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<b>기술신용보증기금</b>(기술신용보증기금법), <b>중소기업진흥공단</b>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) 또는 <b>한국벤처캐피탈협회</b>(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)에서 실시</p> <p>*** 평가는 <b>기술신용보증기금</b>(기술신용보증기금법) 또는 <b>중소기업진흥공단</b>(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)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</p> <p>나. 신청기관</p> <p>■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</p>

### 첨부서류



-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사본, 표준규격사진 1매

<b>사증발급인정서</b> <b>발급대상</b>	<p>② 초청사유서   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④ 산업재산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</p> <p>※ 한·중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, 사증(사증발급인정서) 발급 전 국가정보원과 협의 불요</p> <p>→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 <p>※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	<h3>3.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(D-8-3) 자격</h3> <p><b>가. 허가요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(개인)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</li> <li>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*을 소유 (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)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「연구개발 시설(제16조)」은 100분의 30 이상</li> </ul> </li> <li>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(단,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)</li> <li>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</li> <li>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」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“연구개발시설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</li> </ul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할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</li> </ul> <p><b>다. 사증발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금액,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</li> </ul>
<span style="color: #0070C0;">▶ 목차</span>	<p><b>첨부서류</b></p> <p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17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, <u>수수료</u>     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  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(사용 내역) 입증서류</p>

##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

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(파견기간 명시) 및 재직증명서</li><li>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「연구개발시설」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(성명, 직책, 학력, 연구경력, 근무분야 등) 추가 제출</li></ul>
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
① 현금출자의 경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(금융기관)의 외화반출허가(신고)서(해당자)</li><li>-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(송금확인증, 외국환 매입증명서, 세관신고서 등)</li></ul>
② 현물출자의 경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(관세청장 발행)</li><li>-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</li></ul>
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(물품구매 영수증,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,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)</li><li>-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(사무실 임대차 계약서, 사업장 전경·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)</li><li>-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(필요시 정구) ※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</li></ul>
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

## 4.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(D-8-4) 사증발급

### 가. 기본요건

-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\*를 취득한 사람,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
  - \*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
- 지식재산권\*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\*\*을 가지고 있을 것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허권(특허법), 실용신안권(실용신안법), 디자인권(디자인보호법), 상표권(상표법), 저작권(저작권법)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</li> <li>*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 아이템을 말하며,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</li> </ul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</li> </ul>
<p><b>첨부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</li> <li>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</li> <li>④ 점수제 해당 항목( 및 점수) 입증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식재산권 보유(등록)자는 특허증·실용신안등록증·디자인등록증 사본 ☞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'특허정보넷 키프리스'(www.kipris.or.kr/khome/main.jsp) 활용</li> <li>-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</li> <li>-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'글로벌창업이민센터'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(OASIS) 해당 항목 이수(수료, 졸업) 증서, 입상확인서,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</li> <li>-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

#### **4-1.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,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(D-8-4S) 사증발급**

##### **가. 기본요건**

-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
 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
  -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
- ※ 단,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가능하며, 입국 후 체류기간(6개월) 이내에 법인등기

	<p>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필요</p> <p><b>나. 신청기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</li> </ul> <p>※ 단,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(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)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</p> <p><b>첨부서류</b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</li> <li>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제출 가능 시)</li> <li>③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</li> </ul> <p>※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,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</p> </div>
	<p><b>5. 한·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</b></p> <p><b>가. 발급대상 : 고용방문자(Employment visitor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, 임원,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</li> </ul> <p>(예시) 기업내 전근자, 계약서비스 공급자*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, 독립전문가* 등</p> <p>* 계약서비스공급자 : 인도회사(법인)와 우리나라 회사(법인)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</p> <p>* 독립전문가 : 특정회사(법인)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</p> <p><b>나.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체류자격 : 계약내용 및 파견(고용)형태에 따라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연구(E-3), 기술지도 (E-4), 특정활동 (E-7) 등의 자격 부여</li> <li>사증발급 :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※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</li> </ul> <p><b>첨부서류</b></p>

공통	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(별지 제21호 서식), 여권, 표준규격사진 1매
기업내 전근자	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
계약서비스 공급자 (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)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	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,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(기관)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
독립전문가 (an independent professionals)	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, 관련 분야 자격증,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
<p>→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</p> <p>※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은 초청의 진정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</p>	

### ※ 기업투자(D-8) 사증발급 기본 원칙
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,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 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
- ※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'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'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·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\*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(D-8) 자격 부여 등 억제

#### « \* 제 한 업 종 »

- ▶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(복권발행업, 현상업, 회전판돌리기업, 추첨업, 경품업)을 하려는 자
- ▶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'다' 목(단란주점) 및 '라' 목(유통주점)의 영업을 하려는 자

-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

<b>참고사항</b>	<p><b>관련 판례 :</b>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(D-8) 자격관련(대구지법 2010구합4034)</p> <p><b>1. 처분의 경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(C-2)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(D-8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</li> </ul> <p><b>2. 원고의 주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고는 5,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(D-8)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.</li> </ul> <p><b>3. 판결 요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,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.」</li> </ul> <p>▶ 2심(대구고법 2011누1970, 원고항소 기각), 3심(대법원 2011두30809, 원고 상고 기각)</p>
-------------	--

▶ **목차**